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춘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.

발 의 자 : 정춘생 · 강경숙 · 백선희
장종태 · 이해민 · 임호선
최혁진 · 서왕진 · 차규근
김준형 · 이주희 · 최민희
김태선 · 신장식 · 한창민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.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·시행 및 장애 예방·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가.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

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, 저장장치, 네트워크,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56조의2제1항제4호).

나.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·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, 저장장치, 네트워크,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56조의2제5항).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항은”을 “사항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서버, 저장장치, 네트워크, 전력공급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”로 한다.

4.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, 저장장치, 네트워크, 전력공급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6조의2(정보시스템 장애 예방·대응 및 복구 등)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(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(이하 “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체계적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(이하 “수립지침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56조의2(정보시스템 장애 예방·대응 및 복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<u>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, 저장장치, 네트워크, 전력공급 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</u>
4. · 5. (생략)	5. · 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
② ~ ④ (생략)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·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<u>사항은</u>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사항에</u>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서버, 저장장치, 네트워크, 전력공급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